<bof>

1. [%1](#1 법인세 신고･납부)(#2 법인세 신고･납부)(#3 Corporate tax declaration and payment)[n]
   1. [%2](#1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2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3 Key points on the decla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 [1](#1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2 중소기업의 세금 혜택)(#3 Tax benefi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 {1}(#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3 Corporations classified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entitled to various benefits compared to regular corporations.){r3<n>,r5<n>,r7<n>,r8<n>,r9<n>}
      2. [1x1](#1 중소기업의 범위)(#2 중소기업의 범위)(#3 Scop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 {1}(#1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2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3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differs from that in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3<n>,r5<n>,r7<n>,r8<n>,r9<n>}
      3. [1x2](#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적용시기)(#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n]
         1. {1}(#1 ’15.6.30.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2 ‘15.6.30.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3 The amended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 effective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excluding some clauses), requires attention in terms of its application to laws and regulations.){r3<n>,r5<n>,r7<n>,r8<n>,r9<n>}
      4. [2](#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2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3 Require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ax laws)[n]
         1. [3](#1 업종 요건)(#2 업종 요건)(#3 Business requirements)[n]
            1. {1}(#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2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3 Corporations primarily engaged in all businesses except for consumptive service business){r1<n>,r4<n>,r5<n>,r7<n>,r8<n>}
         2. [4](#1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2 소비성서비스업)(#3 Consumptive service business)[T,r1<n>,e3<n>]
            1. {1}(#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2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3 =Hotel and lodging business (excluding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n}
            2. {2}(#1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3 =Pub business (including general entertainment bar business, club bar business, and karaoke bar business under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except for foreigner-only entertainment restaurant business and tourist entertainment restaurant busines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n}
            3. {3}(#1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3 =Other businesses designed for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purposes 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rdinance.){n}
         3. [5](#1 매출액 요건)(#2 매출액 요건)(#3 Revenue requirements)[n]
            1. {1}(#1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2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3 Each business must be within the criteria of Attachment 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r1<n>,r3<n>,r7<n>,r8<n>,r9<n>}
         4. [6](#1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3 Substantial independence in ownership and management)[n]
            1.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n]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3 Not applicable to companies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or companies deemed to be included or notified as a member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r1<n>,r8<n>}

* + - * 1. [8](#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3 Enterprise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3(1)(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n]

[8x1](#1 최대주주 여부)(#2 최대주주 여부)(#3 Majority shareholder status)[n]

{1}(#1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2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니어야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3 Corporations (including foreign corporations) with total assets of KRW 500 billion or more as of the end of the preceding fiscal year must not own 30% or more of the shar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must not be the majority shareholder (Refer to Article 3(1)(2)(ii)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r1<n>,r7<n>}

[8x2](#1 매출액 기준)(#2 매출액 기준)(#3 Sales revenue criteria)[n]

{1}(#1 관계기업(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 (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합니다.)(#3 In the case of affiliated companies, the average sales revenue corresponding to the investment ratio must be combined to meet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riteria.){ r1<n>,r7<n>}

* + - 1. [9](#1 졸업기준 이내일 것)(#2 졸업기준 이내일 것)(#3 Meet the criteria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ax law)[n]
         1. {1}(#1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2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3 Total assets of KRW 500 billion or more){r1<n>,r3<n>,r5<n>,r7<n>,r8<n>}
    1. [10](#1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3 Determining criteria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 [11](#1 업종의 구분)(#2 업종의 구분)(#3 Classification of businesses)[n]
          1. {1}(#1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2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3 Except for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it follows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Office.){r1<n>,r3<n>,r14<n>,r21<n>}
       2. [12](#1 매출액 판정)(#2 매출액 판정)(#3 Sales revenue determination)[n]
          1. {1}(#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3 Sales revenue as per the income state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r1<n>,r5<n>,r8x2<n>,r14<n>}
       3. [13](#1 자산총액 판정)(#2 자산총액 판정)(#3 Total asset determination)[n]
          1. {1}(#1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2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3 Total assets as of the fiscal year-end date on the balance sheet){r1<n>,r8x1<n>,r9<n>}
       4. [14](#1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2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3 In the case of engaging in multiple businesse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it qualifies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for the relevant business)[n]
          1. {1}(#1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조특령§2③),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2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3 The business with the highest income per business is considered the primary business, and the qualification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s determined based on the total sales revenue of the entire business.){r1<n>,r3<n>,r11<n>,r21<n>}
    2. [15](#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3 Application of the grace perio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 [16](#1 유예기간 적용 대상)(#2 유예기간 적용 대상)(#3 Eligibility for grace period)[T,r3<n>,r9<n>,r8<n>]
          1. {1}(#1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2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초과하는 경우)(#3 =When the revenue of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exceeds the sector-specific threshold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n}
          2. {2}(#1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If any one of the three criteria (business, size, independe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lassification is met in tax law){n}
          3. {3}(#1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3 =When it no longer qualifies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affiliated companies){n}
          4. {4}(#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3 =Wh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o longer qualify due to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n}
       2. [17](#1 유예 적용 방법)(#2 유예 적용 방법)(#3 Methods of applying for grace period)[T,r16<n>]
          1. {1}(#1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2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3 =For the tax years including the initial occurrence of the relevant reason and the following three tax years, the company is considered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n}
          2. {2}(#1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2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3 =After the grace period has elapsed, the qualification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s determined for each tax year.) {n}
       3. [18](#1 유예기간 적용 제외)(#2 유예기간 적용 제외)(#3 Exemptions from grace period application)[T,r16<n>,r17<n>]
          1. {1}(#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 =중소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3 =When merging with companies oth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n}
          2. {2}(#1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3 =When a company in its grace period merges with another company){n}
          3. {3}(#1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령§2①3)(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When it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substantial independence in ownership and management.){n}
          4. {4}(#1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If, within two years from the tax year-end date on which the founding date falls, it exceeds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riteria as of the tax year-end date.){n}
    3. [19](#1 중소기업 신고에 관한 예규)(#2 중소기업 신고에 관한 예규)(#3 Regulations regar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declarations)[n]
       1. [20](#1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2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3 Determining the relevant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qualification)[n]
          1. [21](#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3 Determining the business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Attachment 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forcement Decree for companies affiliated with relation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riteria)[n]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서면-2019-법인-2297, 2020.04.24.)))(#2 중소기업법에 따른 매출액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3 Companies that do not meet the sales revenue criteria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r3<n>,r5<n>,r12<n>}

* + - * 1. [22](#1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Whether a company meets the criteria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whether it is eligible for retroactive loss deductions)[n]

{1}(#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2019.11.08.))(#2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Upon the completion of the intended business, even if there is no revenue generated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business year to the date of dissolution registration, a company engag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supply business is considered as such. A domestic corporation that i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t the time of dissolution registration can apply for a refund under the retroactive loss deduction.){r3<n>,r11<n>}

* + - * 1. [23](#1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2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3 Determining the primary business of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n]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서면-2018-법인-1894, 2019.11.05.))(#2 주된 사업 판단 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해야 합니다.)(#3 When determining the primary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affiliated company,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n question should be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primary business.){r3<n>,r8x2<n>,r11<n>}

* + - 1. [24](#1 유예기간 적용)(#2 유예기간 적용)(#3 Application of the grace period)[n]
         1. [25](#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2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3 The criteria for substantial independen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1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08.18.))(#2 중소기업기준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3 Applying the grace period when a company that was previously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no longer qualifies as such due to change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riteria.){r16<n>,r17<n>}

* + - * 1. [26](#1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Applic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grace period)[n]

{1}(#1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5.7.))(#2 2015.1.1 이후 최초로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 When unable to meet the independence requirements for the first time after January 1, 2015, and no longer qualifies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 grace period may be applied.){r16<n>,r17<n>}

* + - * 1. [27](#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2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3 The criteria for substantial independen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033, 2021.05.03.))(#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합니다.)(#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with total assets exceeding KRW 500 billion, not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wns 30% or more of the shares of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the latter corporation qualifies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r8x1<n>}

* + - * 1. [28](#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3 Timing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pplication upon exclusion from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n]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020-법인-2522, 2021.04.30.))(#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봅니다.)(#3 When a company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is excluded from that group, it is considered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from the year in which it receives notice.){r7<n>}

* + - * 1. [29](#1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2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3 Applic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grace period for consolidated taxpaying corporations)[n]

{1}(#1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2020.07.17.))(#2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3 If a corporation no longer qualifies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due to the initial applica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grace period provisions may apply according to corporate tax regulations.){r16<n>}

* + - * 1. [30](#1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2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3 Criteria for financial statements when evaluating the independence criterion)[n]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인-2285, 2020.07.10.).)(#2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In assessing substantial independence, total assets and average annual sales are evaluated based on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no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r8x2<n>,r12<n>,r13<n>}

* + 1. [31](#1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2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3 Tax law provisions for suppor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n]
       1. [32](#1 $(법인세법상 지원))(#2 $(법인세법상 지원))(#3 $(Provisions for support under the Corporate Tax Act))[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1. [33](#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1))(#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1))(#3 $(Support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1))[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34<n>,e35<n>,e36<n>}

* + - 1. [34](#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2))(#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2))(#3 $(Support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2))[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e33<n>,e35<n>,e36<n>}

* + - 1. [35](#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3))(#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3))(#3 $(Support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3))[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e33<n>,e34<n>,e36<n>}

* + - 1. [36](#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4))(#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4))(#3 $(Support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4))[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e33<n>,e34<n>,e35<n>}

<boe>